#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692

발의연월일: 2024. 10. 15.

발 의 자:민병덕・이기헌・이수진

한민수 · 이상식 · 김현정

정진욱 • 박민규 • 이광희

안규백 · 김재원 · 이언주

윤후덕 • 박홍근 • 서미화

이강일 • 황운하 • 이병진

박주민 의원(19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택시운수종사자 감소에 따른 택시공급 부족으로 인해 택시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택시부제를 전면 해제하는 등의 정책이 추진된 바 있으나 실질적인 개선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속적·안정적인 택시공급을 위해서는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재정적 지원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택시는 대중교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책 마련에 소극적인 상황임.

이에 현행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택시 관련 지원사항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 극적인 재정 지원을 유도하는 한편, 지속적인 택시운송사업 발전의 법 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4호의3부터 제4호의7까지 신설 등).

#### 법률 제 호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택시운수종사자단체"를 "택시운수종사자단체"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3부터 제4호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의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 형 택시의 여객운송사업
- 4의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 우수 사업자에 대한 포상 및 재정지원 사업
- 4의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의 정착 지원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따른 공공형 지원 사업
- 4의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택시 고급화 및 낡은 택시의 교체 사업
- 4의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제8호에 따른 택시운 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업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우수 사업자에 대한 포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4호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재정 지원) ① 특별시ㆍ광	제7조(재정 지원) ①
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	
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u>택시운수</u>	<u>택시운수종</u>
<u>종사자단체</u> (제4호의2에 따른	사자 및 택시운수종사자단체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	
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 4의2. (생 략)	1. ~ 4의2.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4의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택시의 여객운송
	<u>사업</u>
<u>&lt;신 설&gt;</u>	4의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 제20조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 우수 사업
	<u>자에 대한 포상 및 재정지원</u>
	<u>사업</u>

<u>&lt;신 설&gt;</u>	4의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
	송수입금 전액관리의 정착 지
	원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따른 공공형 지원 사업
<u>&lt;신 설&gt;</u>	4의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 제50조제1항제1호 및 제
	4호에 따른 택시 고급화 및
	낡은 택시의 교체 사업
<u>&lt;신 설&gt;</u>	4의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 제50조제2항제8호에 따
	른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
	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
	요한 지원 사업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